

국내외 교통유도경비 실태 연구

The Study on Domestic and Foreign Traffic Guidance Expenses

김태 환*

Kim, Tae-Hwan

요약

본 논문에서는 도로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유도원(신호수 포함)에 대한 국내외 제도 및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도로 및 공사 경우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 유도경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 초기에는 여러 영역에서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을 것에 대응하여 일정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자격증을 부여하고, 전문교육기관과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자격증 획득과 시험에 의한 검정으로 점차 발전시켜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Keywords : 안전사고, 교통유도경비, 공사현장, 자격제도, 교육기관

1. 서론

교통유도경비는 도로 또는 도로와 접속한 사유지나 접속부에서 차량이나 보행자의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유도경비원이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의의 협력을 구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 일본의 경비업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사람 혹은 차량이 혼잡한 장소 또는 이러한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있어서의 부상 등의 사고의 발생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공사장의 내·외부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 교통소통, 수신호 등 다양한 안전관리기법을 각 주의 규정과 MUTCD(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s)에 의거 적용 운영하고 있다.

2. 교통유도원(신호수 포함) 현황

현재 우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와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및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집행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질서유지인”이란 주취자가 자신을 보좌하며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5항에는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 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때, 방책(방책), 차선(차선) 등의 경계표지(표지)를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중 차량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지침’과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그리고, 도로공사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은 있으나 도로공사나 건설공사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시행 시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를 포함한 교통관리 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안전유도를 위한 신호수의 배치 기준과 교육, 자격증, 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3. 교통유도경비도입 방안

3.1. 자격신설

교통유도경비는 공사 등에 의해 유발되는 지체와 교통 불편을 감소시키고, 교통안전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안전

* 종신회원·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twehwan@empal.com

지도원으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인증을 위하여 검정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일본과 같이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통과한 교통유도경비원에게 1급과 2급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통이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교통유도경비 시행계획(인력 규모, 시간 등)을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3.2. 시행방안

현재 시행 초기에는 민간자격으로 성숙시킬 필요에 따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를 확충하여 이론/실기 학습을 병행하도록 하며, 업무에 특성에 적합한 기관에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초기에는 일정시간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여, 정착단계 이후에는 교육에 의한 자격증 획득과 시험에 의한 직접 검정으로 국가자격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3.3. 향후 추진방안

교통유도경비는 관련법의 개정, 도로 및 건물 공사의 신고제도의 변화, 교육기관의 설립, 자격제도의 도입 및 실행, 관련업계의 참여 등 연구범위의 폭이 넓고,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크며, 사회적인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는 면에서 심도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개별 비영리법인이 현재의 제도적 틀 내에서 추진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건설기술진흥법(전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6조 제2항)」 2021.6.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 2021.1.1

김태환 (2008), 교통유도경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경호경비학회 제21회 국제학술세미나.

일본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안전 기획과, SECURITY TIME 2009년 6월호.